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2.

발 의 자 : 조정훈 · 서천호 · 조지연
최수진 · 김용태 · 박수영
이주영 · 김대식 · 박형수
김장겸 · 정성국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와 진흥을 위하여 2019년 제정되었음.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,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 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,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환경임.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통해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,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등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 ‘한국교육시설안전원’을 ‘교육시설관리공단’으로 전환하여 학교시설 개방·운영, 유지관리, 폐교 활용, 시설정보 통합 관리 등 교육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고자

함. 또한,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담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학교에 책임을 맡기지 않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35조제2항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81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전담기관) ① 교육감은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
2. 교육시설의 안전,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 등의 위탁 업무
3. 폐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
4.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
5. 그 밖에 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

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제6장의 제목 “한국교육시설안전원”을 “교육시설관리공단”으로 한다.

제35조의 제목 “(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)”을 “(교육시설관리공단의 설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개방·운영 지원, 안전 및 유지관리와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안전원”을 각각 “공단”으로 한다.

제36조의 제목 “(안전원의 사업)”을 “(공단의 사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원”을 “공단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5호 중 “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”를 “교육시설의 개방·운영 지원, 안전 및 유지관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6호를 제20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안전원”을 “공단”으로 한다.

16. 교육시설의 개방 및 폐교 관리 등 활용에 관한 업무
17. 교육시설 안전·유지관리·보수 등 학교 시설 지원에 관한 업무
18. 시·도 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 등의 업무
19. 교육시설 정책 기획·연구 및 정책 지원

제37조의 제목 “(안전원의 재정)”을 “(공단의 재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원”을 “공단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원”을 “공단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 중 “안전원”을 “공단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1항 중 “안전원”을 “공단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, 제4항, 제5항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“안전원”을 각각 “공단”으로 한다.

제41조제2항제2호 중 “안전원”을 “공단”으로 한다.

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안전원”을 각각 “공단”으로 한다.

제43조 중 “안전원”을 “공단”으로 한다.

제44조제1항 중 “안전원”을 “공단”으로 한다.

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안전원”을 각각 “공단”으로 한다.

제46조 중 “안전원”을 “공단”으로 한다.

제47조 중 “안전원이”를 “공단이”로, “한국교육시설안전원”을 “교육시설관리공단”으로 한다.

제48조 중 “안전원”을 각각 “공단”으로 한다.

제49조제2항 중 “안전원”을 “공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”을 “지정전문기관, 전담기관 또는 공단”으로 한다.

제50조제3호 중 “안전원”을 “공단”으로 한다.

제54조제3항제5호 중 “한국교육시설안전원”을 “교육시설관리공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3조의2(전담기관) ① 교육감은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</u> <u>1.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</u> <u>2. 교육시설의 안전,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 등의 위탁 업무</u> <u>3. 폐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</u> <u>4.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</u> <u>5. 그 밖에 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</u>

<u>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</u> 제35조(<u>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</u>) ① <u>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(이하 “안전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</u> ② <u>안전원은</u> 법인으로 한다. ③ <u>안전원은</u>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제36조(<u>안전원의 사업</u>) ① <u>안전원</u>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~ 14. (생략) 15. <u>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</u> <u>제6장 교육시설관리공단</u> 제35조(<u>교육시설관리공단의 설립</u>) ① <u>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개방·운영 지원, 안전 및 유지관리와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</u> ② <u>공단</u>-----. ③ <u>공단</u>----- -----. 제36조(<u>공단의 사업</u>) ① <u>공단</u>-----. 1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<u>교육시설의 개방·운영 지원, 안전 및 유지관리</u>----- ----- 16. <u>교육시설의 개방 및 폐교 관리 등 활용에 관한 업무</u> 17. <u>교육시설 안전·유지관리·보수 등 학교 시설 지원에 관한 업무</u> 18. <u>시·도 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 전담기관 운영에 관한</u>
---	--

<신 설>

16. (생 략)

② 안전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37조(안전원의 재정)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~ 4. (생 략)

제38조(정관)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10. (생 략)

11. 그 밖에 안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(생 략)

제39조(총회) ① 안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40조(임원) ① 안전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

기술 지원 등의 업무

19. 교육시설 정책 기획·연구 및 정책 지원

20. (현행 제16호와 같음)

② 공단-----

-----.

제37조(공단의 재정) 공단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정관) ① 공단-----

-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-----공단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총회) ① 공단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40조(임원) ① 공단-----

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
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.

②·③ (생략)

④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
격사유가 있는 자는 안전원의
임원이 될 수 없다.

⑤ 안전원의 임원이 「국가공무
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
히 퇴임한다.

⑥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임원
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와
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
해임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안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
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
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
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
한 지장이 있는 때

⑦ (생략)

제41조(이사회) ① (생략)

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
을 의결한다.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공단 -----
-----.

⑤ 공단 -----

-----.

⑥ ----- 공단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공단 -----

⑦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이사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안전원</u> 규정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	2. <u>공단</u> ----- -----
3. ~ 7. (생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42조(예산 및 결산) ① <u>안전원</u> 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42조(예산 및 결산) ① <u>공단</u> ----- ----- -----.
② <u>안전원</u> 은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<u>공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<u>안전원</u> 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③ <u>공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3조(준비금의 적립) <u>안전원</u> 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결산 시마다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(計上)하고, 이를 적립할 수 있다.	제43조(준비금의 적립) <u>공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4조(이익금의 처리) ① <u>안전원</u>	제44조(이익금의 처리) ① <u>공단</u> ---

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
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
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45조(지도·감독) ① 교육부장
관은 안전원의 지도·감독에 필
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안전원의 업무·회계
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
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
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
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
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원에
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46조(준용) 안전원에 관하여 이
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
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
규정을 준용한다.

제47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
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
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
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
다.

제48조(공무원의 파견) 교육부장
관은 안전원의 이사장이 제49조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5조(지도·감독) ① -----
--- 공단-----

----- 공단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공단-----
-----.

제46조(준용) 공단-----

-----.

제47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--
----- 공단이-----
-- 교육시설관리공단 -----

-----.

제48조(공무원의 파견) -----
--- 공단-----

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안전원에 파견할 수 있다.

제49조(권한 · 업무의 위임 · 위탁) ① (생략)

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이 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0조(비밀 유지의 의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· 2. (생략)

3. 안전원의 임원 및 직원

제54조(과태료) ① · ② (생략)

----- 공단-----
--.

제49조(권한 · 업무의 위임 ·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 공단-----
----.

③ -----

-----지정전문기관, 전담기관 또는 공단-----
-----.

제50조(비밀 유지의 의무)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공단-----

제54조(과태료) ① · ② (현행과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4. (생략) 5. 제47조를 위반하여 <u>한국교육시설안전원</u>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(생략)	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교육시설관리공단</u>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
--	--